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 포항시보

제 833호 2011. 6. 7(화)

### ◀ 입법예고 ▶

○ 포항시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제2011-533호) ..... 2

### ◀ 공 고 ▶

○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제2011-544호) ..... 9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1-533호

「포항시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년 6월 3일

**포항시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보다 나은 환경제공을 위해 건립한 수산물 공동 작업장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 하였으나, 2004년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립으로 하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은 1일 20m<sup>3</sup>이하의 세척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은 원거리로 인한 이용불편 및 품질(신선도)저하등을 이유로 공동작업장 이용을 기피하여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조례를 활용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관리조례 폐지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수산진흥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전화 : 054-270-2858, 팩스 : 054-270-2740, E-mail : lsg9596@korea.kr)에 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연안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수산물공동작업장 시설” (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의 활복, 세척에 필요한 시설물(작업장 시설, 폐수처리시설, 해수인수관로, 창고, 사무실 등) 일

체를 말한다.

2. “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수산물의 할복, 세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작업장을 위탁받아 운영관리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 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비”라 함은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6.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포항시수산물공동작업장
2. 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13번지

## 제2장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①작업장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사 시설의 운영경험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제1항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 시장은 작업장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위탁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폐수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탁자의 책임)**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4. 폐수처리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관계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법적·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5.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폐수 및 배출물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6.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②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시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제5조의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작업장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목적에 위배된 때
  - 2. 수탁자가 운영결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
  -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5. 기타 시장이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 ③수탁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운영포기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제3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제5조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작업장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 강구
- 2. 작업장 사용자 결정 및 관리비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 3. 작업장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 선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1인, 환경단체 대표 1인을 포함한 사용자로 구성하며, 작업장 사용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감사)**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

②감사는 사용자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둔다.

②서기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장 사용료의 징수관리**

**제16조(사용료의 징수)**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한다.

②사용료는 수탁자 책임하에 징수관리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년 운영결산서를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징수관리)** ①수탁자는 사용료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사용료의 징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사용료의 조정)** ①시장은 작업장 운영의 수지분석 및 운영결산서 등을 검토하여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운영관리 비용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료를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유지관리 및 보수**

**제19조(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장은 수탁자 책임하에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한다.

**제20조(관리비 부담)**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지도·감독)** ①시장은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서류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1 - 544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포항 도시계획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6월 8일

## 1.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가. 용도지역 변경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24,857,916.0	-	1,224,857,916.0	100.0	
도 시 지 역	388,542,180.0	(증) 438,030.0	388,980,210.0	31.8	
주거지역	37,227,724.0	(증) 5,236,931.0	42,464,655.0	3.5	
1종일반주거지역	4,706,855.0	(감) 756,364.0	3,950,491.0	0.3	
2종일반주거지역	18,250,562.1	(증) 5,272,068.0	23,522,630.1	1.9	
3종일반주거지역	10,779,057.0	(증) 715,442.0	11,494,499.0	0.9	
준주거지역	3,491,249.9	(증) 5,785.0	3,497,034.9	0.3	
상업지역	4,981,593.0	(증) 332,640.0	5,314,233.0	0.4	
일반상업지역	4,981,593.0	(증) 332,640.0	5,314,233.0	0.4	
공업지역	36,694,397.2	(증) 361,020.0	37,055,417.2	3.0	
전용공업지역	13,957,823.0	-	13,957,823.0	1.1	
일반공업지역	17,698,543.7	(증) 183,760.0	17,882,303.7	1.5	
준공업지역	5,038,030.5	(증) 177,260.0	5,215,290.5	0.4	
녹지지역	212,706,330.8	(감) 5,492,561.0	207,213,769.8	16.9	
자연녹지지역	195,451,026.8	(감) 5,156,237.0	190,294,789.8	15.5	
생산녹지지역	14,752,574.0	(감) 320,560.0	14,432,014.0	1.2	
보전녹지지역	2,502,730.0	(감) 15,764.0	2,486,966.0	0.2	
미지정지역	96,932,135.0	-	96,932,135.0	7.9	
관 리 지 역	219,750,314.0	(감) 174,060.0	219,576,254.0	17.9	
계획관리지역	93,634,542.0	(감) 105,770.0	93,528,772.0	7.6	
생산관리지역	44,797,200.0	(감) 58,480.0	44,738,720.0	3.7	
보전관리지역	81,307,656.0	(감) 9,810.0	81,297,846.0	6.6	
미세분관리지역	10,916.0	-	10,916.0	0.0	
농 립 지 역	589,547,653.0	(감) 263,970.0	589,283,683.0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27,017,769.0	-	27,017,769.0	2.2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구분	지구명	개 소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최저고도지구 (대로1-1호선)	1개소 (6호 광장 ~ 용흥동)	42,105	감)3,748	38,357	
신설	최고고도지구 (우현지구)	1개소 (우현동 산13-3일원)	-	증)45,600	45,600	30m 이하
변경	중요시설보존지구 (해병지구)	1개소	5,896,380	감)41,110	5,855,270	
폐지	개발진흥지구	3개소	292,000	감)292,000	0	
변경	개발진흥지구	1개소 (영일만관광지)	73,000	증)148,366	221,366	
변경	취락지구	2개소	56,166	감)6,351	49,815	
폐지	취락지구	6개소	132,367	감)132,367	0	
신설	취락지구	3개소	0	증)77,522	77,522	

다. 용도구역 변경내용

구분	지구명	개 소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1개소 (자명지구)	145,700	증) 233,905	379,605	구역확장
신설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곡지구 외 15개소	-	증)4,987,475	4,987,475	
폐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광명산업단지외1	1,637,725	감)1,637,725	0	
변경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모포지구외3	503,000	-	503,000	세부시설 변경

## 라.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도 로	· 광로 2-2호선 외 166개 노선 변경 및 신설 (광로 2, 대로 10, 중로 27, 소로 128 개소)	
주차장	· 70호 주차장의 1개소 신설	
자동차정류장	· 2호 여객터미널외 1개소 폐지	
광 장	· 18호광장 외 3개소 변경(변경 3, 신설 1)	
공 원	· 환호공원 외 5개소 변경(변경 5, 신설 1)	
녹 지	· 4호 완충녹지 외 8개소 변경(변경 2, 신설 5, 폐지 2)	
수도공급설비	· 1호 수도공급설비시설 변경	
학 교	· 오천 문덕고등학교 폐지 · 오천 신흥중학교외 1개소 변경 · 대잠동 외국인학교 신설	
공공청사	· 14호 공공청사의 1개소 변경 (두호동사무소 변경, 농업기술센터 신설)	
방재시설	· 초곡천 신설	
공동묘지	· 1호 공동묘지 변경	
하수도시설	· 포항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 청하 하수종말처리장외 1개소 신설 · 우목중계펌프장 폐지	
폐기물처리시설	· 3호 쓰레기매립장 변경 및 7호 매립장 폐지	

※ 기타 상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조서는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http://www.ipohang.org))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1. 6. 8 ~ 2011. 6. 27
- 열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실음 생략)

##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11. 6. 8 ~ 2011. 6. 27 (열람기간 내)
- 제 출 처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4. 기타 :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270-3465)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